

사서교사!

실망 그리고 희망의 언저리

실망

'2011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사서교사 배치 0명', '2012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사서교사 배치 1명' (그나마 전출에 따른 총원). 2년 연속 사서교사가 되려는 기회조차 앗아간 교육 당국의 조치로 또 누구누구는 참 쓸쓸한 가을을 보낸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065호) 제21조에서는 사서교사의 신분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0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

육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히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직원과는 그 역할이 다르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업무를 담고 있는 법령을 보면, 학교도서관은 평생교육과 독서교육의 장이며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다.

〈표 1〉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담고 있는 법령의 주요 내용

법령	독서교육·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관련 조항
「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법률 제9641호)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발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9470호)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1명 이상 둘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2010년 현재 전국 11,389개 학교의 98.52%에 해당하는 11,183개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46).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11,183개 학교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46.1%인 5,15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서교사는 6.5%인 724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교육이며 독서교육을 직원이 담당해도 된다고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담긴 이러한 통계 수치 앞에서 ‘교육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또 ‘사서교사 자격제도를 딱히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그리고 세계인이라는 교육적 인간상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철저한 홀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표 2〉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현황(2002-2010년)

연 도	전담인력(명)			계
	사서교사	사서직원		
		정규직 사서	비정규직	
2002	164	20	880	1,064
2003	232	39	1,135	1,406
2004	284	46	1,685	2,015
2005	313	57	1,881	2,251
2006	424	60	2,716	3,200
2007	537	62	2,552	3,151
2008	625	55	2,858	3,538
2009	699	34	4,281	5,014
2010	724	35	4,391	5,150

(출처: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76))

희망

지난 9월 8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결의 대회가 있었다. 이날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집회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예비사서교사나 사서교사만의 집회는 늘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폄하된다는 염려 탓에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사서교사 배치를 촉구하는 뜻을 들고 참석한 덕분이다. 학교도서관이 아무나 문만 열어두고 있으면 해결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소중한 배움의 터전임을 확인하고 일깨우는 첫 출발이었다.

“아이는 누구나 교육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임무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공교육의 든든한 토대이자 평등교육의 모체이다. 아이들은 학교도서관의 수많은 책과 자료, 그 아늑한 공간을 통해 나와 너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서를 풍부히 가꿀 수 있으며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

- 2011년 9월 8일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결의문 중에서 -

이제 남은 일은 사서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변화된 학교 교육의 모습, 사서교사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달라지고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2010년에 이루어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 12)에서 독서시간과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논술교육의 미비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사서교사 배치를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다. 김해시가 지역개발을 전제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짚는 첫 번



▲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 결의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

째 조건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도서관 경영을 책임질 파트너의 존재 여부(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214)라는 사실도 반가운 일이다. 학교도서관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내 서비스 기반 자체가 불안하고, 사서교사가 배치된 경우에도 혼자 힘으로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방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와 보조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장의 의견(송기호 등 2011, 118)은 환영할 일이다. 학교도서관은 무상독서와 교육복지의 상징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류명옥 2009; 이미숙, 송기호 2011)에서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권과 교육복지를 위해서 사서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용자 입장에서 사서교사의 존재 가치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희망을 현실로

현실적으로 사서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서교사 배치에 관한 임의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논의된 사서교사 배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서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 ¹⁾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24호)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²⁾ 1. 20학급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에는 사서교사 1인을 두고, 실기교사 1인 및 사서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2. 20학급 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1인 또는 사서직원 1인을 둔다. 3. 12학급 이하의 초, 중, 고등학교에는 교육공무원법 제 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3. 순회사서교사는 최대 3개의 학교를 순회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955호)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 1) 이찬열 의원 등 19명이 2011년 1월 26일에 공동발의 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76)의 내용임.
2)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2009년에 학교 급별 평균 학급 수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제시한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안)의 내용임.

(출처: 송기호 등 2011, 131)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한계를 갖는다면 차라리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그나저나 사서교사의 교육주제 전문사서로서의 법적 위상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서직의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1. 11. 4.] (<http://www.moleg.go.kr>)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독서교육메뉴얼.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류명옥. 2009. 정신지체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 계획 추진실적: 중앙행정기관.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송기호 등. 2011.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이미숙, 송기호. 2011. “특수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507-534.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76)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2010.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 기준의 개정안. 서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2009년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자료집)

글 | 송기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화정보교육 전공 전임강사
gijho7@dreamwiz.com



* 2011년 지상블로그를 집필한 배경재 님, 김지홍 님, 홍기호 님, 김은엽 님의 글은 이번호로 끝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글을 써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